

[서식 예] 공사대금청구의 소(조적부분 하수급인이 바로 위 도급인을 상대로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공사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 · 피고의 신분관계

원고는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지 200㎡ 위 지상 7층 지하 1층 빌딩신축 공사 중 조적부분공사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수급인이고, 피고는 위 신축빌 딩공사를 수급한 원고의 바로 위 도급인입니다.

2. 원고는 2000. O. OO. 피고와 위 빌딩신축공사의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m²당



60,500원,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〇〇. 〇〇. 〇〇.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,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 대로 20〇〇. 〇. ○.부터 조적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공자재 및 현장인부를 투입하여 설계도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.

- 3.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기간 내에 조적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사대금 25,000,000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적공사대금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조적 공사완료 다음날인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공사계약서1. 갑 제2호증작업일지1. 갑 제3호증완공확인서1. 갑 제4호증통고서1. 갑 제5호증답변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나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